

건설기계 표준 임대차 계약서 개정(안) 신·구 조문 대비표

대한건설기계협회

현행 표준약관	개 정 (안)	개 정 사 유
제3조(건설기계의 가동시간) ①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1일 8시간, <u>월 200시간</u>을 기준으로 한다. ② (생 략) ③ 야간작업과 기준시간 초과 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료는 주간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료에 관련 법령이 정한 시간당 건설기계 손료 및 건설기계조종사(조수 포함, 이하 같다) 임금을 다음의 산식에 적용하여 산출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, 별도	제3조(건설기계의 가동시간) ①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1일 8시간, <u>월 174시간</u>을 기준으로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▶ 법 적용에 따라 일요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 건설현장 작업 제한으로 가동시간 단축 불가피 ▶ 야간작업 시간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

정산 처리한다. <u>다만, 야간작업 시간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규 정에 따른다.</u>	----- . <u>다만, 야간작업 시간의 규정 및 이에 대한 건설 기계조종사의 인건비는 근로기 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른다.</u>	
*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 : 실적 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(<u>국토 해양부 훈령</u>)에 따라 산출	* ----- -----(<u>국토 교통부 훈령</u>)-----	▶ 명칭 변경(<u>국토해양부 훈령</u> → <u>국토 교통부 훈령</u>)
제6조(대여대금 지불조건) ① “을”은 건설기계 대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, 대여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 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 터 각각 <u>60일</u>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 까지 “갑”에게 대여대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.	제6조(대여대금 지불조건) ①. (생략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30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	▶ 건설기계 대여관계는 도급관계가 아니며, 건설기계 대여대금에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임금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, 해당 업종의 특 수성과 경제여건을 고려하였을 때, 「근로기준법」의 임금지급 기준에 따라 30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② “을”은 “을”에게 건설공사를
도급(하도급을 포함한다)한 자
(이하 “병”이라 한다)로부터
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대여대
금을,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
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시공한
분에 상당하는 대여대금을 각
각 지급받은 날(공사대금을
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
음만기일을 말한다)부터 15일
이내에 “갑”에게 현금으로 지
급하여야 한다.

③. (생략)

② -----

----하며, 지급일이 지난 후에
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
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
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
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.

③. (생략)

▶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, 기성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 지급토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8항 개정사항 반영

1.~2. (생략) 3. <u>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</u> 중 “을”이 “갑”이 시공한 분의 대여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4. (생략) ④ 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“갑”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 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 “을”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대금의 지급을 <u>2회 이상</u> 지체한 경우로서 “갑”이 “병”에게 대여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.	1.~2. (현행과 같음) 3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“을”이 “갑”이 시공한 분의 대여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4.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 ----- -----<u>1회 이상</u>----- ----- -----.	▶ 공사의 구분(공공공사 및 민간공사) 없이 대여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대여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사유(공제조합 면책사유)에 해당되어 보증 불가 ▶ 대여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발행이 불가 하므로 직접 지급만 가능
제6의2조(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) “을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	제6의2조(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) -----	▶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보증체계 변경 사항 반영(기존 : 개별보증

규칙 3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(분할계약 시 합의)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“갑”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.	--- 34조 및 68조의3 규정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, “갑”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“을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.	→ 현행 : 현장별보증)
제9조(“을”의 권리와 의무) ① “을”은 현장 내 지하매설물, 지상 위험물 등에 대하여 건설기계	제9조(“을”의 권리와 의무) ① -- ----- -----	▶ 충분한 고지 미비 및 안전관리자(신호수 포함) 미배치 등 건설업자의 의무 소홀에 따른 사고

조종사에게 작업 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,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<u>하여야 한다.</u> ② (생 략) <신 설> <신 설>	----- ----- -----<u>지도·감독</u> <u>하여야 한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“을”은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른 검사 등에 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 연식을 이유로 “갑”의 사용 및 운영을 금지하지 아니한다.</u> ④ <u>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“을”은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른 적성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해 연령을 이유로 “갑”의 고용 및 운영을 금지</u>	발생 시 책임 주체 명확화 필요 ▶ 부당한 연식제한 금지조항 신설 (2022년 12월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7조제10항 준용) ▶ 부당한 연령제한 금지조항 신설 (2022년 12월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7조제10항 준용)
--	--	--

	<u>하지 아니한다.</u>	
제10조(계약해제 및 해지)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서면으로 <u>상당한 기간을 정하여</u> 이행을 최고하고,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 ②.(생략)	제10조(계약해제 및 해지) ① -- ----- ----- -----15일 이내 ----- ----- ----- --. ②. (생략)	▶ 계약해제 기간의 명확화(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기간 근거)